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

I. 운영현황

'92년 리우선언을 계기로 국제질서는 환경을 축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명령과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 왔음.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기업'간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95년 4월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 '95년 6월 :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 접수 시작
- 2001년 3월 : 95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부 他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원활치 않음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기술 및 전문인력 등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대기업들은 환경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오염방지관련 전체 투자비율이 4.4%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매월 환경단속에 적발되는 400여개의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함.

이에 제도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두어 국가환경정책 목표 달성과 환경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의무로서 법규준수, 환경사고 예방관리, 효율적인 환경성과, 지속적인 친화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1】연도별 환경친화기업 지정 현황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3
지정업체	28	77	122	102	122	99	95

II. 문제점

○ 지정제도

- 심사당시의 실적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지정·인증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관리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목표를

제시하지 못함.

지정·인증의 획득이 목표달성으로 인식되고 환경조치 및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친환경경영의 수준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평가

- 현재의 평가기준은 ISO-14000과 유사하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문인력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지켜지기 어려운 상징적인 기준임.
- 환경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된 대기업에서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환경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등 비현실적 요소가 있음.
- 또한 기업 경영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이론적인 평가가 기업의 환경친화 의욕을沮喪시키고 있음.

○ 효과

-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행정단속이나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준이라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지만 평가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불안감이 상존함.

○ Incentive

-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됨.
- 또한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법규상에 제시된 인센티브조차도 얻을 수 없음.
-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부족하여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도 활용효과가 떨어져 기업이 외면하고 있음.

III. 개선방안

○ 지정제도 → 등급제도로의 개편

- 지정제도를 등급평가제로 전환하여 등급에 따라

Incentive를 차등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등급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

- 등급은 Moodys 또는 Standard & Poors의 신용도 평가 등급(AAA ~ D : 10~20단계)(표5 '환경신뢰도 평가 등급' 참조)과 유사하게 하고, 향후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신용도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초기에는 환경신뢰도가 일정수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ISO-14000인증 획득업체)이 스스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등급평가
- 등급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실시
- 등급하락요건 발생시 자율적인 개선기회 부여
- 환경친화기업 등급향상을 통해 사고예방, 저비용·고효율 달성, 기업이미지 제고 등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
- 환경친화기업 등급제도가 환경라벨링 Type III 및 기업 자율환경관리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경영시스템으로서의 ERP구축 등에 반영되도록 발전
- 향후 환경친화기업 등급제도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전시켜 미주, 유럽 등의 시스템에 필적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

○ 등급평가업무의 민간 이양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민간기관이 단계별로 모든 사업장의 등급을 평가하여 DB화
 -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 행정기관 지도점검 등 종합적인 정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등급평가
- 기업체, 업종별 협회, 민간 또는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활용(심사위원 Pool制)
-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에 대한 청정기술의 진단 및 지원, 지도, 교육훈련, 개선계획수립 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가능

○ 평가의 단순화

— 모든 단계의 평가는 주요 관리점 위주로 단순화시키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도록 실시하여 환경신뢰성을 향상

- * 1단계 : 법규준수
- * 2단계 :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성에 중점
- * 3단계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활동 전개
- * 4단계 : 모든 경영요소가 환경친화시스템으로 지속

— 발생가능한 오염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분석 → 이 결과에 따라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관리사항 결정 → 관리사항의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관리기준을 설정 → 준수여부의 감시를 통한 공정전반의 환경안전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존재해야 함

* 신뢰도등급 평가 기준 : 별첨 환경신뢰도 평가프로그램 참조

○ 등급에 따른 Incentive의 차별화

— 기본 10단계(AAA ~ D)의 등급에 따라 Incentive를 차별화

[표 2]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구분	인센티브 내용
현행규정	1.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신고로 대체 2.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면제 3.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 신청시 우선 순위 적용
추진사항	제조업 1. 행정기관 지도 점검 면제 환경 관련법 확대 적용(예기물, 유해화학물질등) 2. 공장내 실제 점검감에 대한 기본부과금 감면 차등적용 3. 기업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신용도 평가시 가산점 부여
	건설업 1. 표준환경관리비 계상 제도화 2. 공공건설공사 사전인찰자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5) 3. 관급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시 가산점
	서비스업 1. 환경개선부담금 차등 적용 2. 호텔 등급 심사시 가산점 부여

환경신뢰도 평가 프로그램

환경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은 ISO 14000 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수준구별이 가능토록 한다.

① 인증이나 지정여부만 알 수 있는 ISO 14000 인증제도와 환경친화 기업지정 제도와는 달리 회사별로 신뢰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며 특히, 회사의 홍보나 수출/납품을 위해 단순히 제도에 편승한 회사와는 차별화한다.

② 신뢰성 평가는 ISO 14000인증제도의 골격인 시스템적 체계와 환경친화 기업지정 제도의 법규준수와 실질적인 성과요구를 수용한다.

③ 신뢰성 평가는 준법성, 안전성, 효율성, 지속성의 4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심도있고 일관성 있게 민간기관에서 평가를 한다.

[표 3] 환경신뢰성 평가요소

· 준법성	환경, 안전, 소방 등의 법규준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측정 및 평가, 사후조치 등의 체계와 개정법규 및 국제협약의 Monitorings를 통한 준법 경영의 실질적 개선과 법규준수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평가
· 안전성	오염, 누출, 폭발,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사전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해 위기의 가정, 잠재위험요인의 발굴·평가·선정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의 운영을 평가
· 효율성	환경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적용하려는 제반활동과 환경부하 저감을 5R(Reformulation, Redesign, Reduce, Reuse, Recycle) 및 Mass Balance 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평가
· 지속성	조직의 전 부분과 기능에서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을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운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통한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평가

④ 신뢰성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에서 기업신용도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신뢰성향상 체계가 환경라벨링 Type III 및 기업자율환

경관리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하며, 기업의 ERP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 환경관리를 기업의 경영시스템에서 작동 되도록 한다.

⑥ 환경친화기업 등급제도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향후 한국의 환경친화기업 등급제도를 미주,

유럽에 대응하는 아시아 국가의 환경 경영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한다.

⑦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 전국 Network를 구성·운영하여 기업간의 환경정보 교류 및 효율적인 환경개선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기업에서 추진한 우수환경개선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보급한다.

[표 4] 환경신뢰도 종합평가등급

AAA	환경친화지속성, 효율성이 최고 수준
AA	환경친화지속성, 효율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A	환경효율성이 높지만 경영환경변화에 다소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
BBB	환경효율성이 있지만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저하가능성이 있는 수준
BB	환경법적인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 안전성면에서는 Risk요소가 있는 수준
B	법적수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Risk가 있는 수준임
CCC	환경사고의 발생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할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수준
CC	환경사고의 발생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
C	환경사고의 발생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D	현재 환경사고 또는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 AAA~BBB : 사고 발생 또는 법규를 위반할 Risk가 낮은 상태임.
 * BB이하 :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성, 효율성, 안전성, 준법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발생 및 법규 위반 Risk가 있는 상태임

[표 5] 분야별 환경신뢰도 평가등급

준법성등급	Ca-,+	국내외 법규에 대한 Monitoring과 이에 대비하는 수준임
	Cb-,+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으로 관리하는 수준임
	Cc-,+	법규는 준수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자체기준이 필요한 수준임
	Cd-,+	법규위반이 우려되고 있는 수준임
	Ce-,+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수준임
안전성등급	Sa-,+	안전성이 확보되어 위험잠재요인 제거와 비상시 대처능력이 우수한 수준임
	Sb-,+	위험잠재요인이 발굴과 대응능력은 있으나 비상시 안전성 확보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Sc-,+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유해위험시
	Sd-,+	법규위반이 우려되고 있는 수준임
	Se-,+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수준임
효율성등급	Ea-,+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개선효과가 뛰어난 수준임
	Eb-,+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개선성과가 있는 수준임
	Ec-,+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이 일부조직위주로 추진되며 개선성과가 있는 수준임
	Ed-,+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이 노력과 공정밸런스 관리가 미흡한 수준임
	Ee-,+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낮고 공정밸런스가 관리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
지속성 등급	Fa-,+	경영 각 요소에 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환경성과가 뛰어난 수준임
	Fb-,+	공정이 전체적으로 친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나 환경성과가 더욱 요구되는 수준임
	Fc-,+	공정이 부분적으로 친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어느 정도 환경성과가 있는 수준임
	Fd-,+	부분적으로 친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나 환경성과가 미흡한 수준임
	Fe-,+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생산 유통을 답습하는 수준임

